

제주더큰내일센터 「더 탐나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청년의 가능성을 미래로 연결하고자 하는 제주도 내·외 기업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08. 1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 공고개요

1. 공고명: 제주더큰내일센터 「더 탐나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2. 모집대상: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청년(이하 “탐나는인재”)와 함께하고 싶은 제주도 내·외 기업
3. 모집기간: 2020. 08. 10. ~ 2020. 08. 31. ※내용에 따라 기간 상이
4. 모집내용: 제주더큰내일센터 「더 탐나는 프로그램」

※ 「더 탐나는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기반의 실습 프로그램(이하 “실습”)과 실무 기반의 인턴십 프로그램(이하 “인턴십”)으로 구성됨

모집구분	기간	기업 역할	탐나는인재 역할	센터지원금	기업부담금
실 습 (주 3일)	6개월	프로젝트 기반 과제 운영	센터 교육생으로 기업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행	월 150만원 (탐나는인재에게 지급)	없음
인턴십 (주 5일)	6개월 (연장 시 최대 12개월)	기업 실무기반 인턴십 운영	계약직 근로자로 기업 현장에서 실무 수행	월 150만원 (기업에게 지급)	‘20년 기준 월 59만원 이상 지급*

*인턴십 기업부담금: 센터 지원금을 포함하여 매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2020년 기준 209만원) 이상 지급(이외 기간에 따른 퇴직금, 초과수당, 4대 보험 등 기본급을 제외한 부분은 별도 기업이 부담해야 함)

□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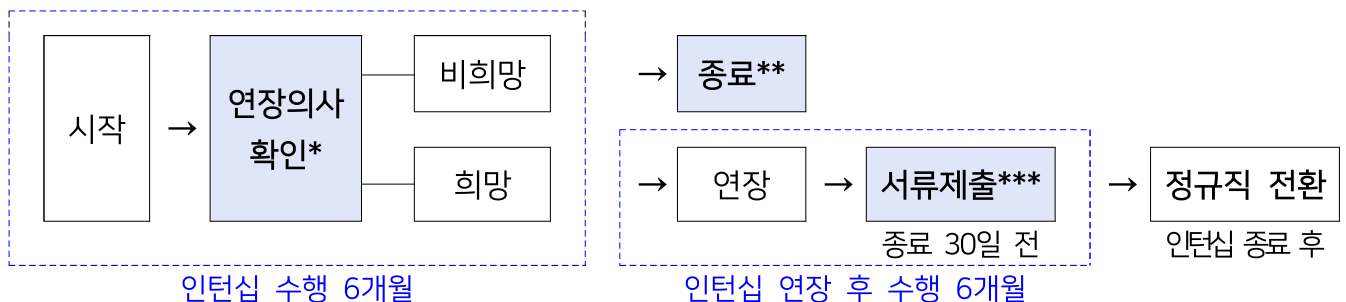
1. 실습 프로그램

- 프로젝트 기반의 과제를 탐나는인재에게 제안하여 기업담당자와 같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 운영기간: 6개월
- 운영내용: 탐나는인재가 “서포터”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현장의 프로젝트
- 운영방식: 기업이 프로젝트를 제안 → 공고 → 탐나는인재 지원 → 면접 → 채용
- 희망인원: 팀 단위로 구성하여 모집신청 가능(프로젝트 당 최소 2명)
※단, 지원한 탐나는인재가 1명일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운영 가능
- 탐나는인재 신분: 센터 소속 교육 훈련생(근로자 아님)

2. 인턴십 프로그램

- 기업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업담당자 관리 아래 수행하는 프로그램
- 운영기간: 6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 *아래 도식 참고
- 운영내용: 탐나는인재가 “인턴”으로서 기업에 소속되어 실무를 경험하게 함
- 운영방식: 기업이 채용공고 제출 → 공고 → 탐나는인재 지원 → 면접 → 채용
※단, 채용공고는 센터 채용공고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고만 게시 가능
- 희망인원: 제한없음
- 탐나는인재 신분: 기업 소속 계약직 근로자이자 센터 소속 교육 훈련생

<도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흐름



*연장의사확인: 인턴십을 진행하는 기업은 **계약종료 60일전에** 센터에 연장의사를 밝혀야 함. 연장 시에는 최대 6개월 더 연장하여 총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음

**종료: 탐나는인재와 연장을 비희망할 경우 인턴십은 종료되며, 탐나는인재의 다른 기업과의 매칭을 위해 조기 종료할 수 있음(이때 종료일자는 합의 하에 정함)

***서류제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십 종료 후 탐나는인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며 **종료 30일전에 정규직근로계약을** 센터에 제출해야 함(정규직 전환일자는 인턴십기간 종료 후 즉시)

□ 참여기업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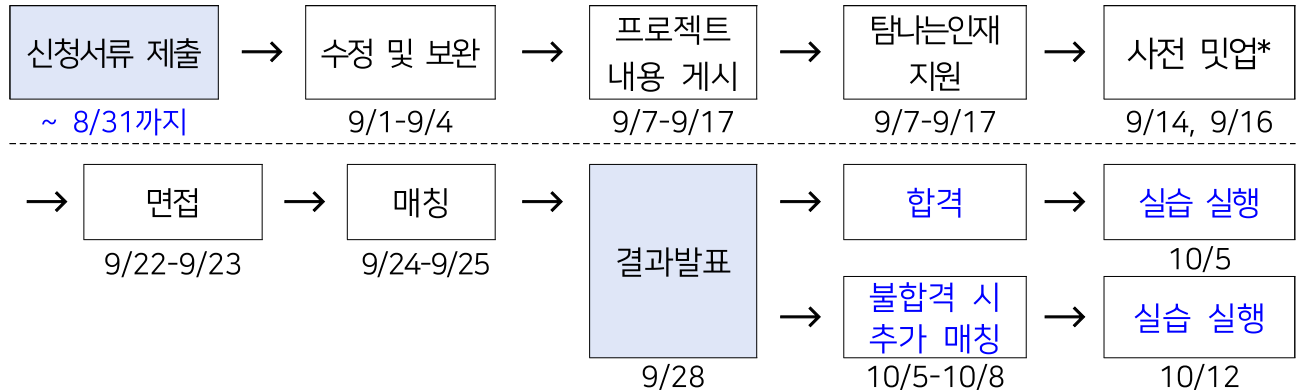
1. 실습 프로그램: 제주도 내 소재지에 등록된 기업
※본사가 도 외에 있더라도 제주도 내 지점(또는 지사)이 등록된 경우는 가능
※본사가 제주에 소재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수행장소가 도외지점(또는 지사)인 경우도 가능
2. 인턴십 프로그램: 소재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제한 기준>

1.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
2. 지원일 기준 4대 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단, 제주더큰내일센터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탐나는인재가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일에는 4대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타 탐나는인재를 채용한 후에는 즉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3. 지원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가 실시 중인 사업장
4. 지원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5. 지원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6. 부정수급 등(타 보조금 사업 포함)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7. 채용하는 기업의 대표자(고용주)가 탐나는인재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
※센터가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제출
8.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나,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채용 불가
9.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 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장
10.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ex.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11.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ex.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단,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며 외근이 필요한 업무(영업관리, 마케팅 등)는 가능하나 단순히 영업을 위해서 상시 외근만 하는 업종은 지원 불가
12. 기타 사회통념상 탐나는인재가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골프장 잔디관리,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서비스 등 단순노무직종
**단, 탐나는인재의 진로상 필요하고 연관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가능
1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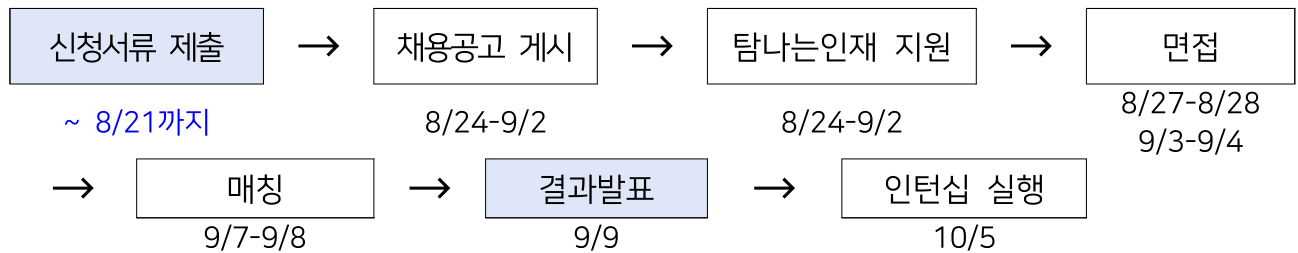
□ 추진 일정

1. 실습 프로그램



*사전 밋업: 프로젝트 내용 또는 기업에 관해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담당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 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인턴십 프로그램



□ 신청방법

- 제출기한에 따라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실습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 둘 다 신청 가능
- 이메일주소: jdnc.pat@gmail.com
- 문의: 제주더큰내일센터 취창업연계팀 064-720-8931~4, 8914

구분	실습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서류	1. 탐나는기업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업소개자료 1부 4. 프로젝트맵(제안서) 1부	1. 탐나는기업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업소개자료 1부 4.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채용공고 등록 신청서 1부
신청기한	마감: 8/31	마감: 8/21

1. 실습 프로그램

(1) 신청 관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탐나는기업'에 등록되어 관리됨

(2) 참여기업과 탐나는인재의 관계

- 매칭된 기업은 제주더큰내일센터(이하 "센터")와 탐나는인재와의 3자 협약을 체결함
- 탐나는인재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습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업은 탐나는인재가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실습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야 함
- 기업은 탐나는인재에게 근로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3) 실습 기간

- 실습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6개월
- 기업과 탐나는인재가 모두 희망할 시에는 실습 종료 후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음(단, 실습 종료 전 희망 의사를 알려야 함)

(4) 수행조건

- 수행시간: 주 3회 기업 출석, 주 2회 센터 출석
- 수행내용: 기업은 제출한 프로젝트맵(제안서) 내용과 다른 프로젝트를 탐나는인재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수행 시간대를 정하거나 프로젝트와 무관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음
- 수행장소: 본 실습은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수행장소는 프로젝트 교육장소로 볼 수 있으며, 기업 내 또는 기업 관계자가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음
- 기타사항: 기업은 탐나는인재의 활동을 확인하여 매월 출석확인서를 센터로 제출해야 함

(5) 안전관련

- 실습 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실습 협약기간 이행 범위 내에서 출석한 것으로 보며, 1주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센터와 기업의 협의 하에 협약 지속 여부 또는 해지를 결정할 수 있음
- 기업은 탐나는인재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위험한 행동 또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요청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음
- 탐나는인재는 실습 수행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습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 기업은 탐나는인재에게 프로젝트와 관계없는 업무 및 잔무를 시킬 수 없음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3자 협약서 및 센터 관리지침에 따름

2. 인턴십 프로그램

(1) 신청 관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탐나는기업'에 등록되어 관리됨
- 「인턴십 참여기업 제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2) 참여기업과 탐나는인재의 관계

- 탐나는인재는 채용 시점부터 근로계약기간 동안 채용한 기업(이하 "기업") 소속 이자 제주더큰내일센터(이하 "센터")의 훈련생 신분임
- 기업은 탐나는인재와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하며, 근로계약 등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행해야 함
- 기업은 탐나는인재에 대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 기업은 센터 및 탐나는인재와 3자 협약을 체결해야 함

(3) 센터지원금 및 인턴십 급여지급

- 기업은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월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탐나는인재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탐나는인재의 급여는 기업이 先지급하고, 분기별로 센터에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가 기업에게 後지급하는 것으로 함
 - ※단, 기업 사정에 의해 월별 희망 시 센터와 협의 후 월별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지급신청에 관련된 서류 및 방법은 매칭 후 해당기업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
- 급여는 센터지원금(150만원)을 합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수준의 월 급여(2020년 기준 월 209만원)이상을 지급해야 함
 - ※이때 급여기준은 <기본급> 기준이며,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상여금만 포함되며, 매월 비고정적이거나 비일률적인 수당(초과수당, 휴일수당 등) 및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음(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월 급여 산정에서 제외함)

(4) 인턴십 기간(근로계약기간)

- 근로형태: 계약직
- 근로기간: 6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
 - ※단, 종료 60일 전 기업과 탐나는인재는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혀야 하며, 양자가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인턴십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총 12개월간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음. 단, 연장 시에는 종료 30일 전까지 정규직근로계약을 센터에 제출해야 함
 - ※정규직 전환 비 희망 시에는 연장 불가

(5) 안전관련

- 기업은 탐나는인재에 대해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

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해야하며,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성희롱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센터에 알려야 함

- 탐나는인재가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탐나는인재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지원결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
※단, 탐나는인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아닌 별도의 급여지원을 받거나 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산재보험 처리되어 급여수령 시 센터지원금은 그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음

(6) 기타 근로조건 준수

-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적용을 원칙으로 함
- 가산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
- 근무장소: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 명시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는 불가하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 공공장소(회사 등)에서 근무가 불가할 시에는 회사 방침에 따른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사전에 센터에 알려야 함

(7) 변경신고

- 기업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전까지 관련서류*를 센터에 제출해야 함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 기업의 인수, 합병 등 중대한 변경 시에는 고용 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만 인정
※단, 고용관계 유지(고용관계를 맺은 시점), 합병 등의 과정에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 표시(신규고용 절차 등) 유무, 합병이나 인수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변경을 인정함

(8) 지원종료

- 기업 또는 탐나는인재가 연장을 비희망하는 경우, 기업은 지원종료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계약기간 내 인턴십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위반사실에 대한 처리는 「근로기준법」과 「센터 운영지침 -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름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3자 협약서, 「근로기준법」, 「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며 해석 분쟁 발생 시에는 센터 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석함